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달곤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988

발의연월일: 2021. 5. 10.

발 의 자:이달곤·서병수·이채익

조수진 • 이종배 • 김태호

하영제 · 김영식 · 김예지

김형동 · 김승수 · 양금희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일부 프로스포츠 선수가 과거 학교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폭로되며, 향후 체육 현장에서의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수립 요구가 커지고 있음.

2021년 6월 9일에 시행될 이 법 제18조의13에 따르면,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은 대한체육회, 지방체육회, 대한장애인체육회, 지방장애인체육 회,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에 소속된 선수, 체육지도자, 심판 및 임직 원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징계정보시스 템을 구축・운영하여야 함.

그러나 이 규정에 따르더라도 현재 교육부가 관리하는 학생선수에 대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징계 조치 정보를 징계정보시스템에서 통합·관리할 수는 없음.

이에 징계정보시스템에서 학교운동부 내 학생선수의 징계 정보를

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폭력에 대한 엄중한 제재 및 예 방의 효과를 강화하고자 함(안 제18조의13). 법률 제 호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17580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의13제1항 중 "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"를 "경기단체, 운동경기부 및 「학교체육 진흥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운동부"로, "체육지도자"를 "학생, 체육지도자"로, "징계에"를 "징계(「학교폭력예방 및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"체육단체"를 "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체육단체"로 하며, 같은 항 후단 중 "단체 등은"을 "자는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운동경기부의"를 "운동경기부 및 학교운동부의"로, "체육지도자"를 "학생, 체육지도자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법률 제17580호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제17580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13(징계정보시스템의 구 | 제18조의13(징계정보시스템의 구 축・운영 등) ① 문화체육관광 축·운영 등) ① -----부장관은 대한체육회, 지방체육 회, 대한장애인체육회, 지방장 애인체육회, 경기단체 및 운동 ----- 경기단체, 운동 경기부(이하 이 조에서 "체육 경기부 및 「학교체육 진흥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운동부-회등"이라 한다)에 소속된 선 수, 체육지도자, 심판 및 임직 원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효율 -----학생, 체육지도자-----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징계 -----징계(「학교폭력 정보시스템을 구축・운영하여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 야 하다. 17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포함 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--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징계 정보시스템을 구축・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체육단 -----관계 중 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 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체육단체 우 요청을 받은 단체 등은 특

별한 사유(개인정보 보호에	관
한 사유는 제외한다)가 없.	으면
요청에 따라야 한다.	

- ③ 체육회등의 장(<u>운동경기부</u> 의 경우 소속된 기관 및 단체 의 장을 말한다. 이하 제4항에 서 같다)은 소속된 선수, <u>체육</u> 지도자, 심판 및 임직원을 징계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징계 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게 재하여야 한다.
- ④・⑤ (생 략)

<u>^ 1 L</u>
③ <u>운동경기부</u>
및 학교운동부의
<u>학생, 체육지도자</u>
④·⑤ (현행과 같음)